

#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우리 동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 권역별 정책 간담회

일시: 2023. 9. 6(수) 오전 11시

~

2023. 9.15(금) 저녁 7시

장소 : 온라인(zoom) 공간

**주최: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장애인 교육 정책 추진단**

(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경남장애인교육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준),  
김천교육너머,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와이낫부모자조모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교육권네트워크(준), 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전남학생인권전문적학습공동체 2wings,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 아이 특별한 아이, 한국뚜렛병협회,  
한국중중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주관: 장애인교육아올다**

# 목차

I. 전국 권역별 정책간담회 일정표 .....	3
II.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장애인 교육 정책안 초안 .....	4
1. 공통 교육 정책안 .....	4
<b>정책안 1</b> 특수교육예산을 2배 확대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과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b>정책안 2</b> 전국 13개 시도에 지역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b>정책안 3</b> 특수교육대상자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 영·유아 교육 정책안 .....	13
<b>정책안 4</b>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장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놀이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b>정책안 5</b>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영아 관련 범조항을 개정하여 장애 영아와 장애 고위험 영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b>정책안 6</b>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유아 관련 범조항을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초·중등 교육 정책안 .....	24
<b>정책안 7</b>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b>정책안 8</b> 다양한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배치 및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b>정책안 9</b>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b>정책안 10</b>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b>정책안 11</b> 장애학생 차별금지를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b>정책안 12</b>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Challenging Behavior)’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b>정책안 13</b>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전공과를 확대하겠습니다.	
4.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정책안 .....	45
<b>정책안 14</b>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중복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b>정책안 15</b> 대학의 장애인 교육 수요 견인 창출하여 장애인 대학교육 10%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5%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b>정책안 16</b>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공고화 하여 학문 후속세대로서의 교수 임용 및 장애인 연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b>정책안 17</b>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b>정책안 18</b>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b>정책안 19</b> 체육과 예술 활동을 위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 (ART-GYM CENTER)를 설립하겠습니다	
III. 질의 응답 및 의견수렴 .....	66

# 전국 권역별 정책 간담회 일정표

권역	일시 및 장소	내용	사회 및 발제
수도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일시: 23.9.6(수) 오전 11시 장소: 온라인 공간 줌 주소: <a href="https://us02web.zoom.us/j/81987212108?pwd=Zlk5UHkvZDlPSmF6TGZ3c04yOUVxZz09">https://us02web.zoom.us/j/81987212108?pwd=Zlk5UHkvZDlPSmF6TGZ3c04yOUVxZz09</a> 회의 ID: 819 8721 2108 암호: 390674	11시~11시 10분: 인사 11시 10분~11시 50분: 18개 장애인 교육 정책안 초안 발제 11시 50분~ 12시 30분: 질의 응답 및 지역 현안 의견수렴	사회: 장누리 (와이낫부모자조모임,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발제: 김형수 (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
경상권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일시: 23.9.8(금) 오전 11시 장소: 온라인 공간 줌 주소: <a href="https://us02web.zoom.us/j/86581407512?pwd=cVQ5eWV5QnNnRjlrZ3kyN2FCSTlrZz09">https://us02web.zoom.us/j/86581407512?pwd=cVQ5eWV5QnNnRjlrZ3kyN2FCSTlrZz09</a> 회의 ID: 865 8140 7512 암호: 091005	11시~11시 10분: 인사 11시 10분~11시 50분: 18개 장애인 교육 정책안 초안 발제 11시 50분~ 12시 30분: 질의 응답 및 지역 현안 의견수렴	사회: 이미주 (교육청 인권지원단,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  발제: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 대 사무국장,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
전라권역 (광주, 전남, 전북)	일시: 23.9.13(수) 저녁 7시 장소: 온라인 공간 줌 주소: <a href="https://us02web.zoom.us/j/84072791041?pwd=d1dtZjBnbFNhZjZHaTd2bWU5Yk11dz09">https://us02web.zoom.us/j/84072791041?pwd=d1dtZjBnbFNhZjZHaTd2bWU5Yk11dz09</a> 회의 ID: 840 7279 1041 암호: 508558	7시~7시 10분: 인사 7시 10분~7시 50분: 18개 장애인 교육 정책안 초안 발제 7시 50분~ 8시 30분: 질의응답 및 지역 현안 의견수렴	사회: 이은경 (전교조 전북특수교육위원회, 중등특수교사)  발제: 김효송 (전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
충청권역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일시: 23.9.15(금) 저녁 7시 장소: 온라인 공간 줌 주소: <a href="https://us02web.zoom.us/j/84230799640?pwd=YmN0T2ZlY2xMaTFcYS8rc3FaemdSUT09">https://us02web.zoom.us/j/84230799640?pwd=YmN0T2ZlY2xMaTFcYS8rc3FaemdSUT09</a> 회의 ID: 842 3079 9640 암호: 971870	7시~7시 10분: 인사 7시 10분~7시 50분: 18개 장애인 교육 정책안 초안 발제 7시 50분~ 8시 30분: 질의응답 및 지역 현안 의견수렴	사회: 최명진 (전 대전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  발제: 허영진 (전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

##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장애인 교육 정책안 초안

### [공통 교육 정책안]

**정책안 1** 특수교육예산을 2배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과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 1-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국가별 특수교육 재정지원 현황은 전체 교육예산과 특수교육 예산, 그리고 전체 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로 제시하면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예산 중 3.8%인 약 3조 2373억을 특수교육 예산에 활용하고 있음(2022,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반면 미국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 예산 중 21%인 약 14조 8,600억의 교육 예산을 특수교육 운영에 지출하였으며(2020, 미국 교육 예산 재구성), 한국의 특수교육 예산을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특수교육 예산을 현재 3.8%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음.

#### 1-2. 정책 내용(요약)

-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을 6조 4746억으로 2배 이상 확대
- 특수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전국 13개 시도에 특수교육원 설립,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및 평가 담당인력 추가 배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센터 설립을 통한 행동지원, 유초중고 통합교육 지원교사 추가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권 보장 및 교사

의 노동권 보장

### 1-3. 정책 설명(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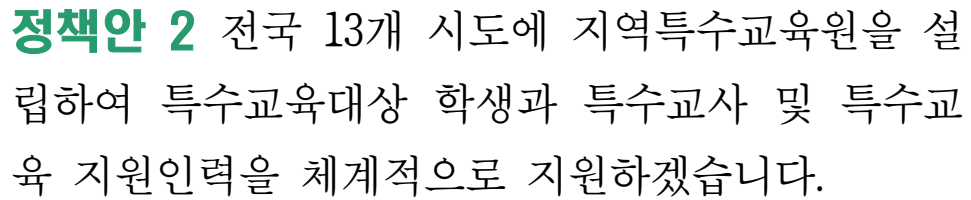
-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교육예산 중 3.8%인 약 3조 2,373억을 특수교육 예산에 활용하고 있음(2022,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이는 미국 보다 5배 적은 금액임(2020, 미국 교육 예산 재구성). 이에 특수교육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여 6조 4746억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 특수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현재 특수교육원이 설립되지 않은 전국 13개 시도에 특수교육원 설립하여 지역별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정책 수립, 교사 연수 및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지원을 위한 쉼터 및 중재 등의 역할 수행
- 특수교육 예산 확대하여, 전국 202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 및 평가 담당인력을 1천명 이상 추가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굴, 조기 선정,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 예산 확대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센터 설립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인권상담, 행동지원 중재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사를 지원
- 특수교육 예산 확대하여, 전국 유초중고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 예산 확대하여, 중복중증장애학생과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보(특수교육 실무사 및 보건교사 등)

### 1-4. 소요 예산

- 전체 교육 예산 중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3조 2,373억원 x 2배 = 6조 4746억원

## 1-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정책안 2** 전국 13개 시도에 지역특수교육원을 설립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13개 시도에 특수교육 설립이 필요함.
-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 증가폭이 둔화 되고 있으며 학령 인구 수는 매년 20만명 이상 급감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의 전체 학생 수는 587만명이고 그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109,703명으로 약 1.8%(2023년 기준)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1.8%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연도별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1.2%), 2014년(1.2%), 2015년(1.3%), 2016년(1.3%), 2017년(1.4%), 2018년(1.4%), 2019년(1.5%), 2020년(1.6%), 2021년(1.7%), 2022년(1.8%)로 나타남(2022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현재 지역의 특수교육원은 경남, 충북, 대전, 대구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강원, 제주, 세종지역 등은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함.

## 2-2. 정책 내용(요약)

- 전국 13개 시도 지역 특수교육원 설립

### 2-3. 정책 설명(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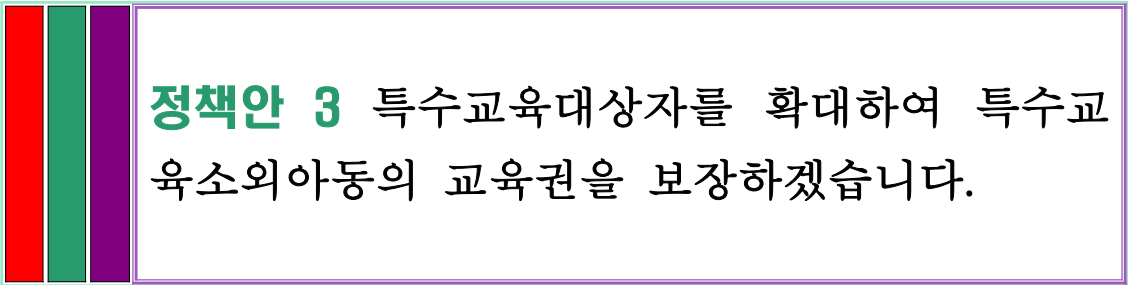
-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및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 13개 시도에 특수교육원 설립
- 한국의 전체 학생 수는 587만명이고 그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10만 3,695명으로 약 1.8%(2022년 기준)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지역의 특수교육원은 경남, 충북, 대전, 대구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며 강원, 제주, 세종지역 등은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함.
- 2014년 가장 먼저 설립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 명시된 설립 목적은 ①장애특성에 맞는 체험·수련 활동을 통한 기초생활능력 및 자립생활 능력의 신장 ②특수교육정보화, 문화예술 지원 등을 통한 장애학생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 ③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관련서비스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④특수교육 교원 및 일반교원, 특수교육 지원인력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 ⑤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과 장애공감 문화 조성 등임.
- 장애 학생을 직접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교사 등에는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케 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임. 이를 위해 경남특수교육원은 연구기획과, 교육운영과, 운영지원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음. 연구기획과에는 교육연구사가, 교육운영과에는 파견교사가, 운영지원과에는 주무관이 주로 포진돼 있음

### 2-4. 소요 예산

- 전국 지역 특수교육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13개 시도X1억원 =13억원
- 전국 지역 특수교육원 설립비: 13개 시도X140억원=1,820억원

## 2-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 **정책안 3** 특수교육대상자를 확대하여 특수교육소외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3-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및 장애 영역의 비율에 있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의 전체 학생 수는 587만명이고 그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10만 3,695명으로 약 1.8%(2022년 기준)로, 호주 18.8%(2017년 기준), 미국 15%(2021-2022년 기준), 독일 5.2%(2018년 기준), 그리고 일본 5.0%(2019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장애 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지적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한국은 53.1%(2020년 기준), 일본은 66.0%(2019년 기준)로 나타났고, 호주는 인지장애(cognitive disabilities)가 55%(2017년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와 달리, 미국은 특정학습장애(specific learning disability)가 33.2%(2018-2019년 기준), 독일도 학습장애(Förderschwerpunkt Lernen)가 34.6%(2018년 기준)로 나타남. 이처럼 한국, 일본, 호주는 지적장애(호주의 인지장애 포함)의 비율이 높은 반면, 미국과 독일은 학습장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장애 영역 범주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진단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수의 비율은 매우 낮으며,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다른 국가들과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극히 낮다는 것은 특수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 한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및 범주의 확대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조기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3-2. 정책 내용(요약)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제3항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확대 및 선정 기준 구체화 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개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5항 개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확대 및 선정 기준 구체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개정

### 3-3. 정책 설명(상세)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제2항 신설이 필요함. 개정안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10조 제②항(신설)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 확대 및 선정 기준 구체화 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개정이 필요함. 개정안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3. 지적장애(경계선 장애를 포함한다)

11. 중도중복장애

12. 시청각장애

13. 희귀난치성 질환

14. 투렛병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③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3-4. 소요 예산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담당인력 5천만원  
×5명× 202개 = 505억원
- 특수교육 진단평가 도구 개발 연구비: 1억원× 15종 = 15억원
- 특수교육대상 운영위원회 전문성 및 다양성 보장 방안 개발 연구비: 2억  
원× 1회 = 2억원
- 특수교육 진단평가 전담인력 연수: 1천만원× 40개 = 4억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1천만원× 40개 = 4억원

### 3-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 [영·유아 교육 정책안]

**정책안 4**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장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놀이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4-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임. 전국의 놀이시설 7만 9584개 중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30여 곳이며 이는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0.04%에 불과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2023; 시사인; 23. 05. 09 기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배제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이 법률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음. 이렇게 시작된 배제와 차별은 결국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 설치를 차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3호에서는 장애 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 동참과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오락 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놀이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5년 5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선포」 및 이에 따른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 정책이 발표되었음

#### <어린이 놀이현장 전문>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놀이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놀이의 주인은 어린이이다.
- ▶어린이는 차별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성별, 종교, 장애, 빈부, 인종 등에 상관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자유롭게 놀거나 쉴 수 있도록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풍부한 놀이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놀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어린이 놀이 관련 시·도교육청 10대 공동 정책〉

-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1.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충분한 휴식·놀이 시간 보장
  2. 수업 전, 방과후 시간의 학생들 놀이시간 확보 및 여건 조성
- ▶학교 내·외에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3. 학교 운동장을 놀이 중심 공간으로 재구성
  4. 학교 내·외 놀이 공간 마련(빈 공간에 놀이 소재 배치)
  5. 학교 내·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 ▶다양한 놀이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6. (방과후) 교육과정에 다양한 놀이 소재와 프로그램 제공
  7. 학생 교내 행사(운동회, 체육대회 등)에 놀이 프로그램 운영
  8. 돌봄 시간 놀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놀이 교육 실시
- ▶어른들이 놀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 놀이 관련 연수 개설 및 놀이 동아리, 연구회 적극 지원
  10. 가정 및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놀이의 필요성 홍보 강화

- 장애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4조)
-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 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레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 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2019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유아 중심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편성 운영 지침에 의하면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2019 개정 누리과정)
- 2023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들어오는 장애 영·유아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장애 영아: 407명(특수교육지원센터 294명, 특수학교 113명), 장애 유아 8,781명(특수학교 유치원 956명, 특수학급 5,676명, 일반학급 2,149명)), 교육에서 Barrier free 또는 보편적 설계 등의 개념은 학교 건물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장애 영·유아들이 놀이하는 모든 공간

즉, 실내·외 놀이 공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4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장애 영·유아 수 증가(장애 영아: 9,584명,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6,170명,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6,143명)하고 있음(통계청,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 각종 선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유아들이 놀이할 권리를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율은 매우 부족함

## 4-2. 정책 내용(요약)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602개 유치원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수: 1,195개(교육부, 2023특수교육통계)

- 일반학교 전일제 통합학급 설치 유치원 수: 1,407개(교육부, 2023특수교육통계)

○ 전국 1,836개의 특수보육어린이집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 장애 영아 전담: 326개(통계청, 2023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 장애아 전문: 117개(통계청, 2023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 장애아 통합: 1,393개(통계청, 2023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기초 연구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개정

## 4-3. 정책 설명(상세)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및 어린이집 4,438개(유치원 2,602개, 어린이집 1,836개)에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단계적 설치를 제안하는 공약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법」 개정 필요. 「어린이놀이기구법」 제2조에 장애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 있던 ‘어린이’ 라는 표현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 를 추가.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 모두 아무런 불편 없이 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제11조에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도 적합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

○ 전국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기초 연구 사업.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시 필요한 놀이기구, 안전을 위한 지원 인력, 기초 예산 등에 관한 연구 사업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 통합놀이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연구 사업 필요

#### 4-4. 소요 예산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소규모 무장애 통합놀이터 예산 지원비: 1억원(소규모 조합놀이대 설치비) × 2,602개 = 2,602억원

○ 특수보육 어린이집 소규모 무장애 통합놀이터 예산 지원비: 1억원(소규모 조합놀이대 설치비) × 1,836개 = 1,836억원

○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무장애 통합놀이터(조합놀이대) 설치를 위한 기초 연구 2억원 × 1회 = 2억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 2억원 × 1회 = 2억원

#### 4-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정책안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영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여 장애 영아와 장애 고위험 영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2021년 9월부터 생후 14일~35일까지로 건강 검진 시기가 앞당겨져 총 8차례 이루어지고 있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애의 발견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
- 2023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 영아는 407명(특수학교 113명, 특수교육지원센터 294명)인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2023특수교육통계)
- 2008-2009년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 평가(K-ASQ) 결과 ‘정밀진단을 요함’으로 평가된 아동은 0.9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09), 이를 근거로 장애 영아 추정수를 계산해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근거로 2023년 기준 특수교육 지원을 받은 장애 영아는 전체 장애 영아의 약 5.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출생아수 연도	출생아 수	정밀진단 요구 영아 출현율	조기 개입 요구 영아수(예상)
2020	272,337명	0.95%	2,587명
2021	260,562명	0.95%	2,475명
2022	249,000명	0.95%	2365명
합계			7,427명

(출처: 통계청 제공 출생아수합계출산율자연증가 등의 지표 재구성)

- 2021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영아의 수는 총 43,880명이었고(통계청, 2021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현황), K-ASQ는 선별 검사로서 민감도가 50%인 점(김은영, 성인경, 2007)을 감안하면 2021년 기준으로 21,940명의 영아가 발달 고위험군에 속할 것으로 예측됨
- 전국의 192개의 특수학교 중 영아학급 설치교는 31개이며 (서울 8개, 부

산 6개, 인천 1개, 광주 4개, 대전 3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2개, 충남 2개, 전북 1개), 대구,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은 0개 (교육부, 202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2022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장애 영아 학급 수는 56학급(서울 10개, 대구 7개, 인천 1개, 대전 4개, 경기 27개, 강원 1개, 충북 1개, 경남 3개, 제주 2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교육청은 영아학급이 0개인 것으로 나타났음(교육부, 2022특수교육연차보고서)

○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 영아의 지역별 편차도 심함,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받는 장애 영아 254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55명, 부산 0명, 대구 8명, 인천 4명, 광주 0명, 대전 6명, 울산 5명, 세종 0명, 경기 76명, 강원 4명, 충북 9명, 충남 2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25명, 경남 8명, 제주 50명인 것으로 나타남(교육부, 2022특수교육연차보고서)

○ 장애 영아 및 장애 고위험 영아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및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 이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미비하고 체계적이지도 않음

## 5-2. 정책 내용(요약)

- 장애 영아 및 장애 고위험 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 장애 영아 관련 범조항 개정
  - 장애 영아 및 장애 고위험 영아 진단·평가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 장애 영아 및 장애 고위험 영아 지원 인력 및 서비스 확충

## 5-3. 정책 설명(상세)

- 장애 영아 및 장애 고위험 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체계 확립
  -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영아 및 장애 고위험 영아를 진단·평가하고 서비스를 안내받는 과정 체계 구축
  - 장애 영아 및 그 가족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교육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 영아 교육을 위해 장애 영아 및 그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지원 서비스를 ‘조기개입 서비스’로 정의하고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기관과 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지원 방법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영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과 별개로 장애 영아 조기교육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심의하고 평가할 조기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 병원 또는 의원에서 장애 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하는 복잡한 현행 장애 아동 선별 체계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로 일원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고위험 영유아가 진단」 평가를 받도록 개정하여 장애 영아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 장애 영아 및 장애 고위험 영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및 전문인력을 교육·보육 기관에 배치 (장애 영아 3명 당 특수교사 및 지원 인력 1명 배치)
- 영아 발달 바우처를 지급하여 장애 영아 및 조기개입 요구 영아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5-4. 소요 예산

- 장애 영아 특수교사 인건비: 2,476명 × 5,000만원 = 1,238억원  
(장애 영아 추정 수 7,427명 기준, 3명의 장애 영아 당 특수교사 1명 배치)
- 기관 이용 장애 영아 지원 인력 인건비: 2,476명 × 3,000만원 = 742억 8천만원  
(장애 영아 추정 수 7,937명 기준, 3명의 장애 영아 당 지원 인력 1명 배치)
- 영아 발달 바우처 지급: 7,427명 × 50만원 × 36개월 = 약 1,337억  
(장애 영아 및 조기개입 요구 영아 1인당 매달 50만원 씩 지급, 영아기 3년간 집중 지원)

#### 5-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정책안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 유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6-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2023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공·사립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총 8,781명임(특수학교 유치원 956명, 유치원 특수학급 5,676명, 유치원 일반학급 2,149명)
- 통계청의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12,313명의 장애 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음(장애아 전담 6,170명, 통합 6,143명)
- 어린이집에서 보육받고 있는 장애 유아가 공·사립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에 비해 1.5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 배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만3-만5세의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선정하는 곳은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이고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음
-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단하는 적격성 절차 없이 기관에 배치되어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 12. 8.>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 12. 8.]

-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이 된다면 어느 장소에 배치되었는가와 상관없이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이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함
- 어린이집에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거나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의무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함

## 6-2. 정책 내용(요약)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 장애 유아 관련 법조항 개정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에 따른 특수교사 배치

## 6-3. 정책 설명(상세)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체계 확립
  -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만3세에서 만5세까지의 유아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뿐 현행법 제1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에 해당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되었더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함

- 2022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에 의하면 12,313명의 장애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임(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공·사립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는 8,781명인 것으로 나타남)

- 12,313명의 장애 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음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만5세 장애 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되고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누릴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나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등과 같이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받지 못함

- 이에 만5세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현행법 제17조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적 시스템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무교육의 도입 취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만5세 이하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교육교원으로부터의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6-4. 소요 예산

○ 어린이집 배치 장애 유아 특수교사 인건비: 1,368명 × 5,000만원 = 684억원

(특수교육대상유아 9명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 기관 이용 장애 유아 지원 인력 인건비: 1,368명 × 3,000만원 = 414억 4천만원

(특수교육대상유아 9명당 1명의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

## 6-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 [초중등 교육 정책안]

### 정책안 7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하여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7-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정원(4명당 1명)은 27,426명이어야 하지만 현행 교사는 23,462명으로 85.5%에 불과함. (약 4천여명이 더 필요함)

시도	학생수	교사수	법정정원	법정정원(%)
서울	13,888	3,108	3,472	89.5%
부산	7,135	1,104	1,784	61.9%
대구	5,518	929	1,380	67.3%
인천	7,648	1,332	1,912	69.7%
광주	3,386	662	847	78.2%
대전	3,541	706	885	79.8%
울산	2,910	533	728	73.3%
세종	1,025	237	256	92.5%
경기	26,963	6,156	6,741	91.3%
강원	3,134	723	784	92.3%
충북	4,690	1,101	1,173	93.9%
충남	5,583	1,334	1,396	95.6%
전북	4,273	943	1,068	88.3%
전남	4,336	1,154	1,084	106.5%
경북	5,878	1,270	1,470	86.4%
경남	7,734	1,788	1,934	92.5%
제주	2,061	382	515	74.1%
계	109,703	23,462	27,426	85.5%

<출처 : 2023년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에서 2024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680명 채용 예정임.
- 특수교사 법정정원에 대해 전남은 106.5%지만 부산은 61.9%로 지역별 편차

가 심각함.

- 특히 부산, 대구, 인천, 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 85.5%에 법정정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특수교원의 법정 배치 기준 확보가 필요함.

## 7-2. 정책 내용(요약)

- 특수교사 법정 정원 100% 확보를 위한 연차별 인력 확보

## 7-3. 정책 설명(상세)

- 특수교사 법정 정원 100% 확보를 위한 연차별 인력 확보
  - 연차별 특수교사 1,500명 증원을 통하여 2025년 법정정원 100% 확보
-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마련
  - 법정정원 비율이 낮은 지역의 특수교사 증원

## 7-4. 소요 예산

- 1,500명 × 5,000만원 × 3년 = 2,250억원

## 7-5. 공약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V
시급성					V
실현 가능성					V
개혁성				V	
신속성				V	
대중성					V
이해집단 갈등정도				V	
예산투여도					V

## 정책안 8 다양한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배치 및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8-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2023년 특수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인력(유급+사회복무요원+무급)은 2022년 14,466명에서 2023년 15,785명으로 증가(1,319명 증가하였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음. 현행 지원인력과 관련한 법정 정원 기준은 없지만, 특수교사와 동일하게 4명당 1명의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약 12,000여명의 지원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필요 지원인력의 61% 수준에 불과함.

시도	실무원		학생수		1인당 학생수		4명당 기준	필요인원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서울	2,241	2,356	13,366	13,888	6.0	5.9	3,472	1,116
부산	784	810	6,749	7,135	8.6	8.8	1,784	974
대구	816	825	5,311	5,518	6.5	6.7	1,380	555
인천	725	1,045	7,067	7,648	9.7	7.3	1,912	867
광주	398	433	3,218	3,386	8.1	7.8	847	414
대전	749	760	3,417	3,541	4.6	4.7	885	125
울산	642	662	2,819	2,910	4.4	4.4	728	66
세종	155	192	914	1,025	5.9	5.3	256	64
경기	2,410	2,666	25,150	26,963	10.4	10.1	6,741	4,075
강원	426	414	3,023	3,134	7.1	7.6	784	370
충북	855	988	4,492	4,690	5.3	4.7	1,173	185
충남	662	704	5,228	5,583	7.9	7.9	1,396	692
전북	493	546	4,070	4,273	8.3	7.8	1,068	522
전남	525	555	4,167	4,336	7.9	7.8	1,084	529
경북	960	993	5,521	5,878	5.8	5.9	1,470	477
경남	1,168	1,251	7,338	7,734	6.3	6.2	1,934	683
제주	457	585	1,845	2,061	4.0	3.5	515	-70
계	14,466	15,785	103,695	109,703	7.2	6.9	25,789	12,026

<출처 : 2022년, 2023년 특수교육통계>

○ 특수교육지원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은 같은 기간 7.2명에서 6.8명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수준임.

- 2023년 특수교육지원인력 1인당 지원 학생수는 경기도는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9.7명, 부산 8.8으로 심각함.
- 특수교육지원인력이 배치 되지 않아서 적절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예 : 통합학급에서 수업에서 지원의 미비로 인하여 교육권 차별, 생존수영등 재난교육 배제로 인한 차별,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 참여 배제로 인한 차별, 신변처리 등 지원의 부재로 교육권 침해 등)
- 이에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고, 특수교육지원인력의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종류별 같은 기간 동안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유급 지원인력은 61%에서 59%로 감소하였음. 반면 무급 지원인력은 7%에서 11%로 급증하였음.

- 무급 지원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됨.
- 전체적으로 유급 지원인력은 줄어들고 무급 지원인력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장애학생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음. (예 : 장애 부모 복도 대기 요청, 신변 처리 어려움 시 장애학생 부모 호출, 장애학생 활동지원사 학교 파견 요청 등)
-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14조는 장애학생 보조인력 미배치를 명백한 차별로 간주하고 있지만, 교육부 등은 책무성을 방기하고 있음.
- 이에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급 특수교육지원인력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시도	2022			2023			유급 비율	
	유급	사회복무	무급	유급	사회복무	무급	2022	2023
서울	1,337	904	0	1,416	940	-	60%	60%
부산	639	145	0	648	162	-	82%	80%
대구	557	259	0	562	263	-	68%	68%
인천	679	46	0	712	44	289	94%	68%
광주	258	140	0	272	161	-	65%	63%
대전	562	187	0	582	169	9	75%	77%
울산	348	294	0	343	319	-	54%	52%
세종	145	10	0	177	15	-	94%	92%
경기	1,141	1268	1	1,144	1,522	-	47%	43%
강원	348	78	0	323	76	15	82%	78%
충북	399	62	394	419	50	519	47%	42%
충남	558	88	16	594	83	27	84%	84%
전북	397	96	0	414	110	22	81%	76%
전남	325	193	7	336	218	1	62%	61%
경북	481	335	144	504	316	173	50%	51%
경남	611	297	260	629	290	332	52%	50%
제주	108	75	274	205	40	340	24%	35%
계	8,893	4,477	1,096	9,280	4,778	1,727	61%	59%

<출처 : 2022년, 2023년 특수교육통계>

## 8-2. 정책 내용(요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지원인력과 관련한 규정 마련
- 유급 특수교육지원인력 확대 (4명당 1명 기준으로 연차별 확대 채용)
-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배치를 위한 지자체 협력 방안 마련

## 8-3. 정책 설명(상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지원인력과 관련한 규정 마련  
(인력 배치 기준 및 지원인력의 업무 내용등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③항 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원인력의 내용, 배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
  - 지원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 관련법에 명시가 필요함.
  - 더불어 지원인력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명시.

- 유급 특수교육지원인력 확대 (4명당 1명 기준으로 연차별 확대 채용)
  - 유급 특수교육지원인력 매년 2,000명 채용을 통해 특수교육 사각지대 해소
  - 유급 특수교육지원인력 남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배치를 위한 지자체 협력 방안 마련 (수학 여행 및 현장학습, 생존 수영 등 교외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풀 운영)
  - 기간제 및 방과후교사와 동일하게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보조인력 풀을 의무적으로 마련.

#### 8-4. 소요 예산

- 유급 보조인력 : 3,000명 × 4,000만원 × 3년 = 3,600억원
- 다양한 보조인력 풀(pool) 조성 : 202(특수교육지원센터) × 30명 × 1,000만원 = 606억원

#### 8-5. 공약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V
시급성					V
실현 가능성					V
개혁성				V	
신속성				V	
대중성					V
이해집단 갈등정도				V	
예산투여도					V

## 정책안 9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9-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인 특수학급 설치율이 매우 낮음.

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급	설치율	전체	학급	설치율	전체	학급	설치율	전체	학급	설치율
서울	788	128	16.2%	609	474	77.8%	390	212	54.4%	320	100	31.3%
부산	394	48	12.2%	304	288	94.7%	170	121	71.2%	142	61	43.0%
대구	329	27	8.2%	233	198	85.0%	125	77	61.6%	94	32	34.0%
인천	396	63	15.9%	260	241	92.7%	142	118	83.1%	127	76	59.8%
광주	288	24	8.3%	155	133	85.8%	92	56	60.9%	68	23	33.8%
대전	255	53	20.8%	149	129	86.6%	89	68	76.4%	62	35	56.5%
울산	191	35	18.3%	121	106	87.6%	64	50	78.1%	57	35	61.4%
세종	64	44	68.8%	52	50	96.2%	27	23	85.2%	21	12	57.1%
경기	2,175	353	16.2%	1,320	1,147	86.9%	653	497	76.1%	486	300	61.7%
강원	359	36	10.0%	349	206	59.0%	161	75	46.6%	115	51	44.3%
충북	324	65	20.1%	256	209	81.6%	128	90	70.3%	82	50	61.0%
충남	498	66	13.3%	411	281	68.4%	185	120	64.9%	117	63	53.8%
전북	501	36	7.2%	421	242	57.5%	211	75	35.5%	133	44	33.1%
전남	516	49	9.5%	426	287	67.4%	250	121	48.4%	144	52	36.1%
경북	682	32	4.7%	473	326	68.9%	261	129	49.4%	185	77	41.6%
경남	683	73	10.7%	510	378	74.1%	265	161	60.8%	190	100	52.6%
제주	119	10	8.4%	114	59	51.8%	45	25	55.6%	30	15	50.0%
<b>총계</b>	<b>8,562</b>	<b>1,142</b>	<b>13.3%</b>	<b>6,163</b>	<b>4,754</b>	<b>77.1%</b>	<b>3,258</b>	<b>2,018</b>	<b>61.9%</b>	<b>2,373</b>	<b>1,126</b>	<b>47.5%</b>

<출처 : 2022년 특수교육통계, 2022년 교육통계>

- 2022년 교육통계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과정별 특수학급 설치율은 유치원이 13.3%, 초등이 77.1%, 중학교 61.9%, 고등학교 47.5% 수준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의무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명시하고 있지만,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침해와 더불어 통합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짐.

-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필요함.

○ 제6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 통합교육 지원 미흡

- 교육부는 제6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서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특수학급 여건 개선, 협력기반 통합교육 지원 제도개선 등을 밝히고 있음.
-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 3.6명이지만, 특수학급의 경우 5.8명으로 1인당 학생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합계		
	학생수	교사수	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사수	1인당 학생수	학생수	교사수	1인당 학생수
서울	4,483	1,362	3.3	9,362	1,645	5.7	13,888	3,108	4.5
부산	2,022	396	5.1	5,113	646	7.9	7,135	1,104	6.5
대구	1,908	353	5.4	3,604	485	7.4	5,518	929	5.9
인천	1,946	413	4.7	5,685	817	7.0	7,648	1,332	5.7
광주	1,170	281	4.2	2,216	336	6.6	3,386	662	5.1
대전	1,122	231	4.9	2,413	414	5.8	3,541	706	5.0
울산	775	149	5.2	2,131	343	6.2	2,910	533	5.5
세종	229	68	3.4	796	151	5.3	1,025	237	4.3
경기	5,419	1,828	3.0	21,465	3,971	5.4	26,963	6,156	4.4
강원	866	264	3.3	2,265	403	5.6	3,134	723	4.3
충북	1,384	417	3.3	3,296	580	5.7	4,690	1,101	4.3
충남	1,342	425	3.2	4,239	816	5.2	5,583	1,334	4.2
전북	1,119	342	3.3	3,154	509	6.2	4,273	943	4.5
전남	1,197	362	3.3	3,139	720	4.4	4,336	1,154	3.8
경북	1,501	406	3.7	4,347	735	5.9	5,878	1,270	4.6
경남	1,914	610	3.1	5,813	1,033	5.6	7,734	1,788	4.3
제주	545	161	3.4	1,429	186	7.7	2,061	382	5.4
계	28,942	8,068	3.6	80,467	13,790	5.8	109,703	23,462	4.7

<출처 : 2023년 특수교육통계>

- 안정적이고, 질 높은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 특수교원 확보가 필요함.

○ 통합교육 지원교사 확대 필요

- 교육부는 2020년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지원과 과밀특수학급 지원, 특수학급 미설치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교사를 배치하고 있음.
- 일반교육의 경우 기초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시적인 협력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교사는 유명무실함. 최근 통합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와 통합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협력교사 배치가 절실함.
- 교육부는 과밀학급 및 완전통합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교사를 2020년부터 별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인력에 대한 명칭은 통합교육지원교사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지역별 운영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관련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질 향상을 위해 협력교수를 전제로 하는 통합교육지원교사 인력 확보 및 확대가 필요함.

○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학급 지원

학교급별		특수학급 운영비 (1학급당)
유치원		4,178천원
초등학교		4,072천원
중학교		4,748천원
고등학교	일반계	5,353천원
	상업계	5,242천원
	공업계	6,195천원

출처 : 인천시교육청, 2022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00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기준이 지역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음.
- 특수학급운영비는 특수 학급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

- 지만, 시설 설비 개보수 등 특수학급 운영과 관계없는 경비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 교육부 실태 조사 및 시정 조치 필요)
- 2017년 인천 미추홀구 00초등학교에서 소위 ‘폭염교장’은 특수학급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 진정을 받은 사례가 있음. 차별의 근거로 특수학급 운영경비 미준수도 포함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 사건 17진정0627100)

## 9-2. 정책 요약

-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기준 준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급 신/증설 신청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
- 통합교육지원교사 확대 배치

## 9-3. 정책 설명(상세)

-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교육기관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기준 준수
  -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초과시 특수학급 증설 의무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1명 이상이 있는 학교의 특수학급 신설 의무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급 신/증설 신청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는 특수학급 신/증설의 권한을 학교장이 갖음.
  - 이에 제27조 ①항의 내용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변경

○ 통합교육지원교사 확대 배치

- 초등학교 : 통합교육 협력교수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 중·고등학교 : 지역사회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 지역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특수학급 운영경비에 대한 준수 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 마련

9-4. 소요 예산

- 특수학급 설치 : 11,316학교(원) × 4,000만원 = 4,526억원
- 통합교육지원교사 별도 배치 : 20,356학교(원) × 5,000만원 = 1조178억원

9-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시급성					
실현 가능성					
개혁성					
신속성					
대중성					
이해집단					
갈등정도					
예산투여도					



## 정책안 10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10-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 심각
  -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 5개년 발전계획 등에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계획하였음.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음. (2017년 6월 12일)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학교 교육활동 중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488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0.5%로 나타났음. 그리고 교육-의료체계 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지원 부재로 인하여 장애학생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의료기관의 업무 협약 후, 단위학교에 간호인력 배치 및 의사 순회 진료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 10-2. 정책 내용(요약)

- 중도중복장애학급 설치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의료 인력 배치

- 교내 의료행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

### 10-3. 정책 설명(상세)

- 중도중복장애학급 설치 확대
  - 지역 교육청별 중도중복장애학급 1학급 이상 설치 의무화
  - 중도중복장애학급 특수교사 2인 의무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의료 인력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 간호조무사 등 의료처치 인력 의무 배치
- 교내 의료행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

### 10-4. 소요 예산

- 202개(특수교육지원센터) × 5,000만원 = 101억원
- 202개(특수교육지원센터) × 1명 × 5,000만원 = 101억원

### 10-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시급성					
실현 가능성					
개혁성					
신속성					
대중성					
이해집단					
갈등정도					
예산투여도					



## **정책안 11 장애학생 차별금지를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11-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학교 현장에 장애학생 차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수교육보조인력 미배치로 인한 교육권 침해
  - 장애학생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등과 관련한 옹호지원의 부재로 인한 차별 발생
  -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보호자의 참여 미보장으로 인한 차별
  - 현장학습시 부모 동반을 요구하거나, 보조인력 미배치로 인하여 장애학생 현장학습 참여하지 못하면서 학습권 침해 발생
  - 수학여행 및 1박2일 수련회 계획시 중증의 장애학생 계획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발생
  - 생존 수영 등 재난안전교육에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
  -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행동 및 의사소통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적절한 교육권 보장의 부재
  -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장애학생 참여 거부로 인한 차별

### **11-2. 정책 내용(요약)**

- 전국 지역교육지원청 내에 장애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

### 11-3. 정책 설명(상세)

- 장애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
- 장애학생 인권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교 내 장애학생 차별 시정/권고 체계 마련

### 11-4. 소요 예산

- 장애학생 인권지원센터 202개(지역교육청) × 2억원 = 404억원

### 11-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 정책안 12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 (Challenging Behavior)’ 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 12-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발달장애학생의 ‘Challenging Behavior’ 를 특수교육계에서는 ‘도전적 행동’ 이라 명명하고 있다. ‘도전적’ 이라는 뜻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의도적으로 맞서 싸운다는 뜻으로 적절한 해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올다에서는 행동의 지원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 (전지행)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 발달장애인 중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은 10-20%에서, 많게는 30-50%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특별한 중재를 요하는 중한 수준의 도전적 행동은 10-20세에 발생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이병화, 김준범, 2018)
- 발달장애학생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의 경우 오랫동안 만성화된 경우가 많아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중재로는 해결될 수 없음
- 발달장애학생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으로 인한 교직원과 가족의 상해 경험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부재함.
-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면 단순한 행동의 변화만이 아닌 환경의 변화와 교육과정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 12-2. 정책 내용(요약)

- 교육청에서 학급에 행동지원팀 파견
  - 학급에서 개별화계획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원팀을 바로 파견

- 모든 광역시도에 특수교육원을 설치하여 장애학생 가족 쉼터 설치
  - 긴급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애학생가족 쉼터 설치

-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족지원팀 구성 및 운영
  - 가족지원팀 구성: 특수교사, 행동지원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 가족지원팀 활동: 장애학생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 등 위기 학생 가족에 대한 팀 접근방식의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및 가족사례관리

### 12-3. 정책 설명(상세)

- 교육청에서 학급에 행동지원팀을 긴급 지원-행동지원팀 바로 파견
  - 학급에서 개별화계획을 통해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원팀을 바로 파견 함.
  -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는 대체교사를 지원함.
  -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지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생, 실무사 등 필요한 사람에게 재해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함.
  - 개인적 환경에서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 관련 교육 기회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 대응 전담 부서 및 인력배치

- 모든 광역시도에 특수교육원을 설치하여 장애학생 가족 쉼터 설치
  - 위기에 처한 장애학생의 부모와 가족이 일정 기간(최대 1개월) 장애학생과 떨어져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장애학생가족 쉼터를 광역시도별(지역특수교육원)로 설치·운영
    - 가족쉼터는 (가족)상담 및 (가족)심리치료를 중심으로 부모와 가족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및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 습득 등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힐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 현재 특수교육원은 경남, 충북, 대전, 대구 등에 설치되어 있고, 강원도 및 제주도 등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족지원팀 구성 및 운영
  -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전지행)에 대한 가족지원을 중심으로 행동지원 전문가, 작업치료사(감각통합 전문), 의사소통 전문가,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가족지원팀을 구성하여 전국 202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
    - 가족지원팀의 활동

· 장애학생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가족에 대하여 팀 접근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가족사례 관리를 제공

## 12-4. 소요 예산

### ○ 광역시도별 긴급 장애학생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가족 쉼터 설치: 20억원×17개(광역 시도) = 340억원
- 장애학생가족 쉼터 운영: 5억원(연 인건비+운영비)×17개(광역 시도) = 85억원

### ○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족지원팀 구성 및 운영

- 가족지원팀 구성: 5,000만원×3명(행동지원 전문가, 의사소통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202개(특수교육지원센터) = 303억원

## 12-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정책안 13**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전공과를 확대하겠습니다.

### 13-1. 정책 제안 이유

- 교육부의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6,528명임. 이중 비진학 또는 미취업자 학생수는 2,181명으로 33.4%는 진학도 취업도 못한 상태임.
  -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에서 진학 및 취업을 하지 못한 학생이 지역의 어디로 가는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파악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비진학 또는 미취업자 학생비율이 33% 넘어가는 현실에서 전공과를 늘릴 필요가 매우 커짐. 현재 특수학교의 전공과는 사회적응반과 직업교육반으로 나뉘어서 운영 중에 있음. 자립생활반의 경우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증의 장애학생이 진학함. 실무사 지원 등 지원인력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증의 장애학생의 전공과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전공과에 특수교육실무사를 지원하고 시설과 설비를 적합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교육청은 2021년 전국 최초로 대학형 전공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기존 특수학교 중심의 전공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또한 지역 거점형 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에 전공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교육부의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 중 전공과를 졸업한 학생은 2,371명임. 이중 비진학 또는 미취업자 학생수

는 2,1,159명으로 48.8%는 진학도 취업도 못한 상태임.

- 특수학교 전공과에는 취업률을 높이고 직업교육반에 현장 직업교육을 돕고 새로운 협력회사를 발굴하는 진로 코디네이터가 매우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진로 코디네이터의 채용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장기적인 진로교육이 힘든 상황임.
- 전공과는 취업에 유리한 공업단지 또는 스타트업이 많은 곳 그리고 일반회사가 많은 곳 근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 13-2. 정책 내용(요약)

- 시도별 진로 및 직업교육 전환지원센터 설치
- 전공과 확대(대학형 및 지역사회 기관)
- 진로 코디네이터 배치, 신변처리 지원 및 시설 설비 갖추

### 13-3. 정책 설명(상세)

- 각 시도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전환지원센터 설치 (공단 또는 회사가 많아 취업에 유리한 곳에 설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보장을 위한 전공과 확대
- 대학형 전공과 및 지역사회 기관 전공과 설치 및 운영
- 전공과의 직업교육반은 회사에서의 적응을 돕는 진로 코디네이터 배치
- 전공과의 사회적응반은 유급 특수교육지원인력 배치를 하고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

### 13-4. 소요예산

- 진로 및 직업교육 전환지원센터 17개 시도 X 4개권역 X5억원= 340억원
- 전공과 설치 17개 시도 X 20개X5억원=170억원
- 전공과 진로 코디네이터 배치 17개 시도X 20개X5명X5천만원=850억원
- 전공과 유급 특수교육지원배치17개시도X20개X10명X3천만원=1,020억원

### 13-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V
시급성					V
실현 가능성					V
개혁성					V
신속성					V
대중성					V
이해집단					V
갈등정도					V
예산투여도					V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정책안]

**정책안 14**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중복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14-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은 1973년 UNESCO 한국위원회가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됨. 1980년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가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문화함(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수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여, 우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sup>1)</sup>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제10조 제1항 신설)함.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자가 속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중복중증장애를 진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 2022년 특수교육통계에서 제시한 특수교육대상자 105,695명 중 28,559명(약 30%)이 중복중증장애 학생으로 추정하고, 성인 장애인은 중복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인 추정수<sup>2)</sup>를 약 3,058명 정도를 중복장애라고 보았음(2022년 장애인실태조사).
- 중복중증장애인의 경우 학교 일과 중 상당한 시간을 신변처리 활동에 할애하게 되므로, 중복중증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변처리 활동에 대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신변처리 지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주 접하게 됨. 최근 대표적으로 인천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폐쇄에 따른 뇌사 판정 (2021.8.25.sbs뉴스)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

1)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있으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지닌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중도중복장애)과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닌 사람(시청각장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다.(별표 제11호 신설)

2) 지체장애가 있는 인구가 1,290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 인구가 448천명, 시각장애 인구가 308천명, 뇌병변장애 인구가 279천명, 지적장애 인구가 242천명 등으로 나타남

- 또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장애인을 변기에 끈으로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장기간 방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시설장 등을 고발하라고 권고(2022.9.2.한겨레신문)한 사건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물리적, 인적지원 환경이 부족(장애인교육아올다, 2022)하기 때문임.
-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복지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신변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가 구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한 편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인력 지원을 ‘3명 이상’ 이라고만 명시하여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는 시설장 포함 3명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렇게 되면 10명~15명의 이용인을 시설장을 제외하면 2명의 인력이 케어하는 현실임. 상대적으로 케어하기 어려운 성인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이러한 인력으로는 질 높은 식사지원 등 신변처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시설의 설비도 보완이 되어야 함.

## 14-2. 정책 내용(요약)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신변처리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14-3. 정책 설명(상세)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를 개정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신변처리지원’ 을 포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을 개정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할 시에 전공과 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4조 제5항을 개정하여, 전공과 학생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을 개정하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지원 강화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8조 제4항을 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신변처리지원의 근거 마련

○ 「평생교육법」 제18조 제1항을 개정하여,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포함

○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 제3항을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

○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 제4항을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5항을 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시설·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7항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시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재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2를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제20조의 2 제5항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의 설치·관리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평생교육법」 제18조 제1항을 개정하여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포함(안 제18조 제1항)

#### 14-4. 소요 예산

○ 중복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인력 실태 기초 연구: 2억원

○ 중복중증장애인 신변처리 지원 인력 인건비: 약 2만명X2천만원=4천억원

#### 14-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정책안 15** 대학의 장애인 교육 수요 견인 창출  
 하여 장애인 대학교육 10%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5%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15-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199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이후 꾸준히 장애인의 대학 진학은 꾸준히 늘어 왔으나 [(06) 4,045명 (10)5,213명 (15)8,598명 (19) 9,653명] 2017년 장애인 ‘대학 이상’ 비율 약 15.1%로 전체 대학진학을 약 69%과 비교 여전히 격차는 매우 큼. 특히 장애 정도나 유형별로 더욱 열악함.
-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전문가 배출의 대학 본질에서 장애인 배제는 매우 심각함. 2020년도 219개 일반대학 중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 113개이나, 방송대와 사이버대학의 학생 수를 제외하면 장애인 학생 수는 대폭 줄고 일부 대학의 장애인 학생 편중 문제 역시 심각함.  
 (한국복지대, 대구대, 나사렛대 등 학교만 편중화 되어있음.)
- 2001년 숭실대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 소송 승소 판결로 교육부는 3년 마다 장애학생복지평가제도를 실시, 장애인 학생의 차별철폐와 지원을 늘리고자 했으나 공식적으로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고작 장애인학생도우미사업과 취업지원에 일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밖에 없음. (최대 50% 지원)
- 이에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오히려 종종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장애인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2021년 전주교대 장애인 학생 성적 조작 입학 거부 사례 등 - 교육대학 장애인 모집비율 최대 3.22% 뿐).
- 2020년 장애학생 복지평가 결과에서, 무엇보다 예술대학들이 장애인 학생의 교육환경이 크게 미비 하여 예체능 대학교육의 장애인 차별은 너무 심각하고 복지평가를 받지 않는 대학들은 장애인 교육의 수요와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사각지대로 남음. (농촌진흥청소속 국립한국농업대학의 경우 장애인

학생 관련 통계 및 지원 전혀 없음.)

-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할 때도 장애인 진학기회를 크게 부여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그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학사 이상 장애인 학생 수는 23.3% - 전체 인구 중 25~64세 나이의 50%가 학사 이상의 학력)
- 한편 2019년 기준 사립대학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29.29%에 불과함. 이는 2018년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 45.5%보다 낮음.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관 및 기업’의 2020년 12월 명단에는 총 446곳의 민간기업 중 무려 15곳의 사립대학법인이 포함됨. 최초로 장애인 대학생과 장애인 교수를 배출하고 복지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세대학교도 장애인고용 분담금은 1위를 기록함.
- 더구나 전체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반대로 그 비율이 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취업 역시 과거의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학 입학 수요도 확대될 것임.
- 대학진학 준비과정과 커리큘럼 역시 비장애인 학생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학력 차별과 장애인 차별의 이중고임.

## 15-2. 정책 내용(요약)

- 대학종합평가 주요 평가 항목에 장애인 교육 분야 항목을 주요 평가로 배치하여 대학의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 각 대학 내에 전환교육 및 직업 교육 과정(전공과 등) 설치 장려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확대
-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진출 촉진과 함께 중증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 15-3. 정책 설명(상세)

- 대학종합평가 주요 평가항목에 장애인 교육 분야 항목을 주요 평가로 배치하여 대학의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 대학의 장애인 교육 분야 평가 지표 개발하여 표준화된 평가 실시
- 각 대학 내에 전환교육 및 직업 교육 과정(전공과 등) 설치 장려

- 각 대학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 확대  
: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운영
-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진출 촉진과 함께 중증 장애인 직고용 지원 확대  
: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진출 촉진을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

#### 15-4. 소요 예산

- 대학종합평가 교육분야 평가지표 개발 연구 1× 5억 = 5억원
- 대학 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 모델 연구 1× 10억 = 10억원
-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진출 촉진 및 중증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방안 연구 1× 10억 = 10억원
- 대학 내 전환교육 및 직업교육 기관 설치 219개× 10억 = 2,190억
- 대학 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설치 219개× 10억 = 2,190억

#### 15-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정책안 16**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공고화하여 학문 후속세대로서의 교수 임용 및 장애인 연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15-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1995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이후 꾸준히 장애인의 대학 진학은 꾸준히 늘어 왔으나 [(06) 4,045명 (10)5,213명 (15)8,598명 (19) 9,653명] 2017년 장애인 ‘대학 이상’ 비율 약 15.1%로 전체 대학진학률 약 69%과 비교 여전히 격차는 매우 큼. 특히 장애 정도나 유형별로 더욱 열악함.
- 2021년에는 8,808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0.27%로 불과.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국내 4년제 대학 109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총 1,622명이었으나, 실제 선발되어 등록된 장애인학생은 827명에 그쳐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이 51%에 불과함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정원 외 모집임에도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상황은 장애인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 교육부의 2022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장애인학생 전체 졸업생의 14.7%만이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에 입학함. 이는 전체 고교생의 일반·전문대학 진학률 73.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그 문제가 훨씬 심각함. 서울대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5년간 매년 모집인원을 18명으로 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했지만, 실제 선발은 4~7명 수준으로 전체 모집인원 대비 30%밖에 선발하지 않았음
-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전문가 배출의 대학 본질에서 장애인 배제는 매우 심각함. 2020년도 219개 일반대학 중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 113개이나, 방송대와 사이버대학의 학생 수를 제외하면 장애인 학생 수는 대폭 줄고 일부 대학의 장애인 학생 편중 문제 역시 심각함.  
(한경대, 대구대, 나사렛대 등 학교만 편중화 되어있음.)
- 2001년 숭실대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 소송 승소 판결로 교육부는 3년 마다 장애학생복지평가제도를 실시, 장애인 학생의 차별철폐와 지원을 늘리고자

했으나 공식적으로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고작 장애인학생도우미사업과 취업지원에 일부 예산을 배정하는 것밖에 없음. (최대 50% 지원)

- 이에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오히려 중증 장애인의 입학에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이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장애인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 (2021년 전주교대 장애인 학생 성적 조작 입학 거부 사례 등 - 교육대학 장애인 모집비율 최대 3.22% 뿐).
- 대부분의 장애인학생과 양육자들, 진학지도나 담임교사, 심지어 특수교사들조차도 대학에 입학 것에 있어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할 수 없음을 모르고 오로지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서만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가 많아서 대학 진학을 위해 정보와 상담을 거의 하지 않음.
- 2020년 장애학생 복지평가 결과에서, 무엇보다 예술대학들이 장애인 학생의 교육환경이 크게 미비 하여 예체능 대학교육의 장애인 차별은 너무 심각하고 복지평가를 받지 않는 대학들은 장애인 교육의 수요와 공공성이 중요함에도 사각지대로 남음. (농촌진흥청소속 국립한국농업대학의 경우 장애인 학생 관련 통계 및 지원 자체가 전혀 없음.)
-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할 때도 장애인 진학기회를 크게 부여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그 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학사 이상 장애인 학생 수는 23.3% - 전체 인구 중 25~64세 사이의 50%가 학사 이상의 학력)
- 한편 2019년 기준 사립대학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29.29%에 불과함. 이는 2018년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 45.5%보다 낮음. 고용노동부가 매년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관 및 기업’의 2020년 12월 명단에는 총 446곳의 민간기업 중 무려 15곳의 사립대학법인이 포함됨. 최초로 장애인 대학생과 장애인 교수를 배출하고 복지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세대학교도 장애인고용 분담금은 1위를 기록함.
- 더구나 전체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반대로 그 비율이 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취업 역시 과거의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학 입학 수요도 확대될 것임.
- 대학진학 준비과정과 커리큘럼 역시 비장애인 학생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학력 차별과 장애인 차별의 이중고임.

## 16-2. 정책 내용(요약)

-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내실화 및 확대 방안
- 대학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논리 확산 차단 정책 필요. (대학의 인권담당 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제화 필요. )
- 대학종합평가 주요 평가 항목에 장애인 교육 분야 항목을 주요 평가로 배치하여 대학의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 대학 내의 장애인 인권 교육과 지원 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는 정책 필요.
- 각 대학 내에 전환교육 및 직업 교육 과정(전공과 등) 설치 장려하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확대.
-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진출 촉진과 함께 중증 장애인 고용 지원 확대.
- 대학에서의 체육 수업에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필요.

## 16-3. 정책 설명(상세)

- 대학종합평가 주요 평가항목에 장애인 교육 분야 항목을 주요 평가로 배치하여 대학의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 책임성 강화 (대학내 장애인 인권교육,고용 현황 실태파악 및 질적 제고.  
: 대학의 장애인 교육 분야 평가 지표 개발하여 표준화된 평가 실시
- 각 대학 내에 전환교육 및 직업 교육 과정(전공과 등) 설치 장려
- 각 대학 내에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 확대  
: 기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에 기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운영
-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진출 촉진과 함께 중증 장애인 직고용 지원 확대  
: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진출 촉진을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다각도로 지원.

#### 16-4. 소요 예산

- 대학의 장애인 교육 분야 평가지표 개발 연구 1× 5억 = 5억원
- 대학의 장애인 교육 분야 실태조사 1× 5억 = 5억원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운영 표준 모델을 개발 연구 1× 5억 = 5억원
- 대학의 사회적 기업 진출 촉진과 함께 중증 장애인 직고용 지원 확대  
219개 × 5천만원 × 5명 = 547억원

#### 16-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 정책안 17.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17-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사람은 누구나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앎 자체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앎을 가진 것을 인정받기에 행복하기도 하고, 앎을 이용하여 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기도 한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비장애인이자서 덜 배워도 되고, 장애인은 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더 알아야 하기에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은 누구나 필요한 것인데, 장애인은 사회참여를 통하여 평생교육을 우연히 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평생교육이 더 필요함
- 2023년부터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임.
- 지원 규모는 연간 1회 35만원으로 1회에 한해 재충전이 가능하므로 최대 7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규모는 2022년도에는 500명, 2023년에는 3,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262만 2950명(2020년 5월 기준)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497천여명)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평생교육 바우처(<https://www.lllcard.kr>)에 안내 된 등록 기관은 전체 2,739곳 중 장애인편의시설 576곳,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0곳이며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단차없음, 휠체어 대여, 시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청각장애인 편의서비스 등 장애인편의시설기준이 표시된 기관 안내를 하고 있으나 1개 항목 이상인 경우에 모두 장애인편의시설로 구분되어져 있어서 장애특성이나 장애인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기관도 포함되어있음
- 2023년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한 학습 자율성, 선택권 강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확산,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강화 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과 시설 기반은 부족한 현실이며, 이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확대가 필요함

## 17-2. 정책 내용(요약)

-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 17-3. 정책 설명(상세)

-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 2024년 5,000명, 2025년 1만명 확대( '22년 500명, ' 23년 3,000명)
  - 장애인 평생교육 신청자격 조정 및 소득 기준별 본인 부담금 도입
    - (현행)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개정)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본 중위소득 8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기준
    - (추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평생교육 바우처 본인 부담금 발생)
-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기관 확대
  - 현재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2,739 곳 중 장애인편의시설 576 곳 (약 20%), 이 중 장애인평생교육시설 50곳(약 2%)
    - 장애인편의시설 2024년 전체 25% 확대, 2025년 전체 30%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024년 5% 확대, 2025년 전체 10% 확대

## 17-4. 소요 예산 : 총 240억원

-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 24년 1인 35만원 × 5,000명 = 17.5억원
  - 25년 1인 35만원 × 10,000명 = 35억원
-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정 기관 확대

## 17-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 교육부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관련 자료 발취

- 관련 근거: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5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평생교육과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1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정과제 84-3(교육 약자와 함께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84-5(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

- 관련 계획

2)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한 장애인의 학습 자율성·선택권 강화

- 장애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23년 3,000명)

3)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확산

-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문해교육 기회 증진 및 학력인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반응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4)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기반 강화

- ‘장애인 실태조사(복지부 주관 3년 주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조사·제시하고 (‘23~), 장애 유형별 참여 실태 및 수요 등 조사

\* (현행) 평생교육 6대 영역별 참여 경험 여부를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추정

(개선)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등을 조사하여 제시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확대 유도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프로그램 및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시도교육청 협력 사항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3.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협조, 4. 유·초·중·고등학교 및 평생학습관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5. 시도교육청과 시도지자체 간 유기적 연계·협조 체제 구축

## 정책안 18. 장애인 평생학습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18-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2016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한 조항이 포함됨. 2018년 6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개소되었고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2019년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이 제안됨(김삼섭 외, 2019).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비전으로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사회’를 제안하였고, 장애인의 적극적·능동적 평생학습권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보장,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 구현,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영역으로 제시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어렵고, 참여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역별 편차는 큼. 서울의 경우 발달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2021년 현재 25개 자치구 중 24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 25개구에 설치 예정임. 경기도 역시 거점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 추진 중이며,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전북 군산시, 전주시, 울산광역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등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임.
- 2023년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장애인 학습 자율성·선택권 강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및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따라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자치구마다 운영하고 있으나, 5년으로 이용을 제한하여, 학습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다닐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유형은 크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일반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유형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① 교육청 인가등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장애인야학 포함)
	② 지자체 지정·위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단체
일반 평생 교육 기관	① 대학(원) 부설	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전문대학
	② 원격형태	인터넷 사이버 교육
	③ 사업장부설	기업체 연수원, 백화점, 문화센터, 유통업체 등
	④ 시민사회단체부설	여성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의 부설기관,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등
	⑤ 언론기관부설	각종 신문사, 방송 등
	⑥ 지식·인력개발형태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시설
	⑦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⑧ 평생학습관	시·도 평생학습관,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 주민자치센터, 지역 문화센터, 시민회관(구민회관, 군민회관) 등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등
장애인 복지 시설	①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2020년 12월말 기준 등록장애인 255.7만명 가운데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를 18세~64세로 전제한다면 잠재된 장애인 평생학습자는 1,243천명으로 47.2%임. 그 가운데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수는 75,448명으로 6.1% 나타남.(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현황 참고)
- 2020년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수는 1,296개 프로그램

수는 20,198개이며, 장애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1,046(80.7%), 일반평생교육기관이 161(12.4%),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이 77개(5.9%), 특수교육기관이 12개(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현황>

구분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교강사수	행정사무직원수
전체	1,296	20,198	75,448	8,998	3,63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77	1,060	2,498	1,008	220
일반평생교육기관	161	1,894	6,350	1,492	328
장애인복지시설	1,046	17,244	66,392	6,498	3,089
특수교육기관	12	-	208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20).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장애인야학은 2019년 기준 61개소이고 학생 수는 585명, 운영 프로그램 수는 443개, 지원예산은 약 38억원임.(국립특수교육원, 2019)

<장애성인교육(장애인 야학) 지원 현황>

(단위: 명, 개, 백만원)

시·도	교사 수	학생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지원예산
			문해	교양	직업	기타	계	
서울	20	150	13	3	3	13	32	644
부산	26	56	1	-	1	2	4	50
대구	19	42	2	3	1	-	6	130
인천	76	178	6	17	4	1	28	150
광주	43	71	5	4	1	4	14	300
대전	31	122	6	5	1	4	16	82
울산	14	66	7	14	4	1	26	82
경기	158	575	20	145	8	-	173	825
강원	26	95	5	15	-	8	28	81
충북	54	98	7	11	3	4	25	292
충남	23	53	1	5	2	-	8	48
전북	37	233	8	4	-	11	23	44
경북	12	54	1	4	5	8	18	-
경남	26	162	25	-	-	-	25	980
제주	20	136	5	5	-	7	17	70
전체	585	2,091	112	235	33	63	443	3,778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9).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특성도 다르고 그에 따른 요구도 다름. 시각장애인

- 자립생활, 청각장애인은 그림, 동영상, 자막, 수어통역사 배치 요구, 지체·뇌병변 장애는 직업교육, 보조공학, 스카트러닝 콘텐츠, 사회적 관계, 자세 유지 등을 요구하였고, 중도·중복장애인은 일상생활 프로그램을 요구하였음.(김호연, 2020)
- 또한 중도·중복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그에 따른 교재나 교구 개발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음.(강은영, 이인경, 이재원, 신윤희, 2019)
  - 따라서 18세~64세 잠재된 장애인 성인학습자가 12.43명인 반면, 실제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은 75,448명(10.0%)이었고, 평생교육기관도 1,296개로 나타나, 성인교육시설의 설치 및 확대가 필요함.
  - 또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전국에 61개소이고 지원예산이 시·도의 격차가 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 18-2. 정책 내용(요약)

- 기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평생교육법」 제20조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신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평생교육법」 제20조2의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기준 ‘ 고시 제정(19.09.17)

## 18-3. 정책 설명(상세)

- 기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평생교육법」 제20조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편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신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평생교육법」 제20조2의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기준 ‘ 고시 제정(19.09.17)

#### 18-4. 소요 예산 : 총 240억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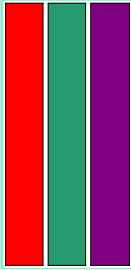
- 1개 기관 × 5억원 = 5억원
  - 설립기관 기능보강비: 1개 기관 × 2억원 = 2억원
  - 설립기관 운영비: 1개 기관 × 3억원 = 3억원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 1개 기관 × 7억원 = 7억원
  - 설립기관 기능보강비: 1개 기관 × 2억원 = 2억원
  - 설립기관운영비: 1개 기관 × 5억원 = 5억원

#### 18-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 **정책안 19.** 체육과 예술 활동을 위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ART·GYM CENTER)를 설립하겠습니다

### 19-1. 정책 제안 이유(현황 및 문제점)

- 성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체육과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예술체육공간은 매우 드문게 현실임.
- 성인 장애인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 과체중이나 비만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곧 장애인의 건강악화 및 만성질환의 발병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음.
- 최근 선진국의 지위에 도달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애인의 삶의 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 예술과 체육은 필수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음.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제고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예술체육활동 공간의 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체육과 예술 활동을 위한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ART·GYM CENTER)를 전국 시도에 설립하는 것이 시급함.

### 19-2. 정책 내용(요약)

- 지자체별 1개 이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 설립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는 뉴 스포츠나 농구 댄스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육관과 음악과 미술, 사진 등 예술 활동을 배우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는 장애 성인 평생교육 체육·문화복합공간을 말한다.

### 19-3. 정책 설명(상세)

- 지자체별 1개 이상의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 설립
  -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는 뉴 스포츠, 농구, 댄스, 수영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충분한 보조강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
  -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는 음악과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충분한 보조강사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
  -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인 아트·짐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

### 19-4. 소요 예산

- 아트·짐센터 설립비 17개 × 100억 = 1700억원
- 아트·짐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17개 × 10명 × 5,000만원 = 85억원
- 아트·짐센터 보조인력 인건비 17개 × 30명 × 3,000만원 = 114억원
- 아트·짐센터 운영비 17개 × 5억 = 85억원

### 19-5. 정책 척도

항목	1점	2점	3점	4점	5점
중요도					√
시급성					√
실현 가능성					√
개혁성					√
신속성					√
대중성					√
이해집단 갈등정도				√	
예산투여도					√

## 2.

## 질의 응답 및 지역 현안 의견수렴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대비 우리 동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 권역별 정책 간담회]

- | 발행일 | 2023년 9월 4일
- | 발행처 | 장애인교육아울다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공익경영센터 NPOpia 500-46호
- | 문 의 | 02-3280-9714, 010-9725-1917
- | E-mail | aalda21@daum.net
- | 회원가입 | <https://forms.gle/6c34PmgSXQ5mhEd26>
- | 홈페이지 | <http://www.aalda.org>